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6조(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% 이상(전기차는 25% 이상)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용 승용차보유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, 화물용, 순찰용,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전기차 도입비율적용 방법 및 대상기관 구분(의무·권고·제외)은 별표8과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미만인 기관</p> <p>2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</p> | <p>제16조(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, 대상기관 구분(의무·권장·제외)은 별표 8과 같다.</p> <p>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</p> |

| | |
|--|--|
| <p>⑤ 중량물 운송용, 협지 운행용 등 전기차 도입이 어려운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차 도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p> <p>< 신 설 >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%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</p> | <p>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</p> <p>3.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</p> <p>⑤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,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</p> <p>⑥ 공공기관은 경차의 보급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|--|--|

